

## 2024년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3차)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28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 1 사업요약

구분	내용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중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기업 ※ 2024년 신청 기준
지원내용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이용비용(공급가액)의 80%(최대 200만원) → 서비스 여러 건 이용 시 총 합산비용 기준 지원
지원금 지급 방식	후지급 (신청기업에서 서비스 비용 선사용 → 서비스 완료 후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 지급)

###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통해 용인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 모집기간: 공고일 ~ 2024. 12. 6. 18시(수시모집,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내용: 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이용비용의 80% 지원
  - 서비스 종류(세부내용은 KOTRA 홈페이지 참고)

no	서비스명	지원내용	이용비용(VAT 별도)
1	잠재 바이어 발굴지원	수많은 해외기업을 직접 접촉할 여건이 되지 않는 기업을 위해 KOTRA가 직접 해외기업을 접촉해 교신의사를 확인(담당자 정보 포함)	15만원/1개사
2	취급기업 정보조사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고객의 의뢰 품목을 수입 또는 취급하는 해외기업 상세 정보 제공(10개사 발굴, 교신지원 미포함)	20만원/10개사

no	서비스명	지원내용	이용비용(VAT 별도)
3	항목별 시장조사	① 수요동향 ② 수입동향·수입관세율 ③ 경쟁동향 ④ 수출동향 ⑤ 소매가 동향 및 유통구조 ⑥ 품질인증제도 ⑦ 생산동향 등 조사	15만원/1항목
4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신청기업의 수출용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해외 공급업체 발굴	15만원/1개사
5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기업에 대한 해외 수입업체의 관심 여부 조사 * 컨택 포인트는 신청기업이 KOTRA에 제공해야 하며, 신규 발굴 불가	5만원/1개사
6	거래 교신 지원	초기 교신이 진행 중인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 교신에 대한 회신 독려, 취지 전달, 의사 확인 등 대리지원	15만원
7	맞춤형 지원서비스	KOTRA 해외무역관이 섭외한 현지 전문가(또는 전담 인력) 활용, 고객 요구에 맞게 수행하는 맞춤형 유료 심층 서비스	조사내용/방법에 따라 개별 협의를 통해 책정
8	바이어 실태조사	신청기업이 이미 접촉 중인 해외 수입업체(공장 등)를 대리 방문하여 존재 여부, 규모 등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45만원
9	현지 매장 방문조사	신청기업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대리 방문하여 현장 조사, 판매자/소비자 인터뷰, 현장 촬영 등 * 최대 2개 매장 방문, 최소 인터뷰 3건, 문항 최대 5개	45만원
10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신청기업이 의뢰하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 * 최대 10문항까지, 최소 10개 이상 회신 결과 제공	45만원
11	샘플 테스트 조사	신청기업의 타겟군 대상으로 샘플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 *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이상 회신 결과 제공	45만원
12	바이어 구매 성향 조사	바이어 대상 구매 성향 및 제품 현지 경쟁력 등 설문조사 실시 * 최대 17문항 구성, 5개사 회신결과 제공	30만원
13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바이어 상담 주선 등 해외 출장 업무 지원 * 일반지원: 바이어 상담 주선(3~4개사) * 프리미엄 지원: 일반지원 + 통역 및 차량 지원	지역별 상이 (홈페이지 참조)
14	샘플 대리 전달	분실/오배송 우려되는 경우, 무역관이 샘플을 대리 수령하여 전달 * 무역관까지 배송은 실비 부담	15만원
15	대리 면담 지원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해외 수입업체와 무역관이 대리 면담 진행	45만원
16	전시회 대리참관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현지 전시회 대리참관, 요청사항 수행, 전시회 현장 정보(사진, 영상 포함), 바이어 명함 확보 등 *100\$ 이상의 입장료는 실비 부담	45만원
17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해외기업 존재 여부 및 대표 연락처 확인. 연간 5개사 까지 무료 지원 * 기업 신용도 및 구매담당자 정보는 서비스 제공 범주에 미포함	5만원/1개사
18	수출24 올인원 알뜰 패키지	잠재 바이어(2개사) 발굴 및 화상상담(최대 2개사) + 발굴 바이어 대상 타겟 마케팅 대행(샘플테크스 조사, 바이어 실태방문조사, 대리면담 중 택1)	90만원
19	수출24 올인원 베이직 패키지	수출24 올인원 알뜰 패키지 서비스 + 항목별 시장조사 (1항목)	105만원
20	수출24 올인원 프리미엄 패키지	수출24 올인원 베이직 패키지 서비스 + 다각도 시장조사* (*소비자 트렌드 조사, 매장 방문 조사, 전시회 대리참관 중 1종)	1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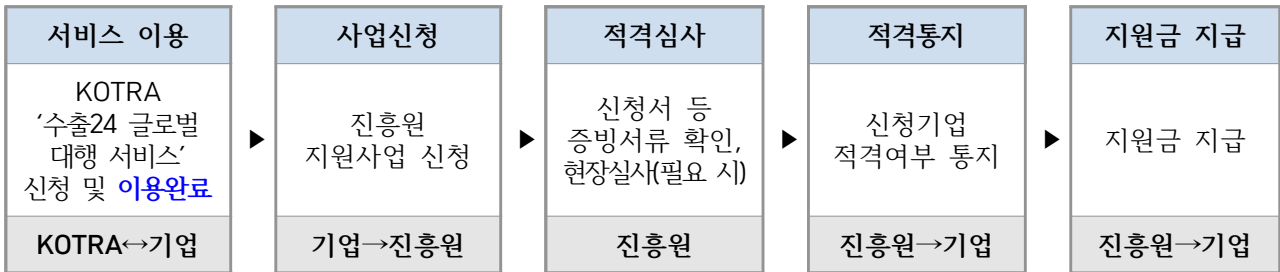
- 지원규모: 00개사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총 서비스 이용비용의 8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업부담금 20%
  - 지원금액 예시
    - 총 서비스 이용비용이 100만원인 경우, 지원금 80만원(80%) 지급
    - 총 서비스 이용비용이 250만원인 경우, 지원금 200만원(80%) 지급
    - 총 서비스 이용비용이 300만원인 경우, 지원금 200만원(최대 한도) 지급
- ※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지원 제외

##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확인)
  - 2024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를 신청하고,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기업
- 신청횟수: 연 1회 신청가능
- 제외대상
  - 2024년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
  - 2024년 기준 진흥원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해외지사화 지원)’ 수혜기업은 신청 불가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아이디어)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 수혜불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기업 명목이 아닌 에이전트(대리인)등의 명목으로 참가하는 경우
  -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회수

### 3 지원금 지급

#### □ 추진절차



#### □ 지급방법

- 신청서,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 검토, 현장실사 진행 등을 통해 신청 기업 적격여부 판단
- 신청기업에게 적격여부 통지 및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접수
- 지원금 지급(지급처: 지원기업에게 직접지급)
- 부가가치세, 수수료, 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지원 불가

### 4 신청방법

#### □ 신청기간: 공고일 ~ 12. 6. 18시(수시모집,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접수를 마감하며, 신청 순서대로 선정 예정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ybs.ypa.or.kr](http://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메일/우편 접수 등 불가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사이트 오류 등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불가,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

#### □ 문의처

- 수출지원팀 이현주 책임(031-323-4676, [iamlhj@ypa.or.kr](mailto:iamlhj@ypa.or.kr))

### 5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해야 함
- 서류 접수 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방문을 진

행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 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세, 송금(이체)수수료 등 지원 불가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사업 안내문 참고)

## 6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각각 변환하고, 파일명을 하단의 예시처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 기업명\_제출서류명 (예시: A주식회사\_사업자등록증)

구분	구비서류	부수	비고	발급처
1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공장등록증 명원(해당시)	1부	-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 - 공장이 용인시 소재일 경우 공장등록증 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국세청 홈택스, 관할세무서
2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a href="https://sminfo.mss.go.kr">https://sminfo.mss.go.kr</a> )
3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 제공서식 활용 (PDF 형식)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필수)	진흥원 양식
4	확약서	1부	- 제공서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PDF 형식)	진흥원 양식
5	지방세 · 국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서류 제출 (PDF 형식)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6	사업완료보고서	1부	- 작성 후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진흥원 양식
7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견적서	각 1부	-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견적서 일체 ※ 이용한 모든 서비스 견적서 제출 (PDF 형식) (서비스 9건 이용 시, 견적서 9건 제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8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결과보고서(산출물)	각 1부	-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결과보고서 ※ 이용한 모든 서비스의 KOTRA 무역관 결과 보고서(산출물) 제출 (PDF 형식) (서비스 9건 이용 시, 산출물 9건 제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9	이체증빙	각 1부	-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대금 이체 증빙 일체 제출	-
10	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신청 증빙	1부	- myKotra 내 신청완료 사업 → 서비스 신청일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화면 캡처 (PDF 형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별첨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1부. 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9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